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수정)공고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주요 수정사항

1. 소득기준 변경

당 초	변 경
중위소득 100% 이하 (‘20.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고소득자 제외 (2019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2. 제출서류 간소화

당 초	변 경
세대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고용 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제출	세대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고용 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제출 생략

3. 접수기간 변경(연장)

당 초	변 경
‘20.4.10(금) ~ 4.20(월)	‘20.4.10(금) ~ 4.29(수)

2020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장

I.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부산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대상자
- 지원내용 :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 접수기간 : 2020. 4. 10.(금)~4. 29.(수) ※신청기간 연장
- 접수방법 : www.covid19busanhelp.kr(부산고용특별지원.kr)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일자리정보망,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
-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 접수 → 적격여부 검토 → 승인 → 지급

웹사이트 접속 (신청자→웹사이트)	신청서 작성 (PC, 모바일)	신청서 제출 (PC, 모바일)	접수 및 검토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접수전용 웹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확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여부 검토 ◦ 중복 수혜 조회 ◦ 지원 우선순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 각 구·군 취업정보센터에서 온라인 접수방법 안내

- 운영기관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2 자격 요건

- 사업장 기준
 - 부산 소재 50인미만 사업장(5인미만 영세사업장 우선지원)
 - '20.2.23~3.31 기간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무급휴직 발생 월의 전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산정 (전월 말일 기준)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은 지원 제외
- 근로자 기준
 - '20.2.23.이전 부산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 '20.2.23 이후 무급휴직 기간이 통산하여 5일 이상 시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및 1인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
-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및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과 '20.2.23~3.31 기간동안 중복 없으면 본 사업 신청 가능
- 유급휴가지원금 수혜자(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고소득자 제외 : 2019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자

3 지원내용

○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일 2.5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2.5만원 × 4시간) ÷ 8시간 = 일 1.25만원
- 1개월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6시간(일 1.875만원, 월 최대 37.5만원)
 - 소정근로시간 4시간(일 1.25만원, 월 최대 25만원), 2시간(일 0.625만원, 월 최대 12.5만원)

○ 지원기간 :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20일

-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20일 분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C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 불가
다만,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10일분, C사업장에서 10일분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4. 10.(금) ~ 4. 29.(수) ※신청기간 연장
- 작성서류 : 홈페이지 신청 시 작성 및 첨부
- 접수방법 : www.covid19busanhelp.kr(부산고용특별지원.kr)
 -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일자리정보망,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
 - 각 구·군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방법 등 안내
 - 사업주 일괄 신청이 원칙이나 개별근로자 직접 접수도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사업주 신청 시	근로자 신청 시
홈페이지 작성	[서식1-1]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사업주용)	[서식1-2]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근로자용)
첨 부 서 류	홈페이지 양식 다운 (1)[서식1-3]무급휴직 사업주 확인서(한글) (2)[서식1-4]무급휴직 근로자 상세내역서(엑셀) (3)[서식1-6]개인정보처리동의서 (4)[서식1-7]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5)[서식1-8]신청 확인서	홈페이지 양식 다운 (1)[서식1-5]무급휴직 사업주 확인서(한글) (2)[서식1-6]개인정보처리동의서 (3)[서식1-7]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4)[서식1-8]신청 확인서
	(6) 무급휴직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무급휴직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1), (2), (5)의 양식은 사업주 작성 ※ (3), (4)의 양식은 근로자 작성	※ (1)의 양식은 사업주 작성 ※ (2), (3), (4)의 양식은 근로자 작성

5 지원금 지급

○ 접수 후 제출서류 검토 및 중복 수혜여부 등 조회, 소득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 설정

※ 5인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내 소득수준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지급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 지원대상 통보 후 5일 이내 지급 ※ 조회지연 등으로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 사유로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등 제출을 통해 타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6 관련 문의

○ 전화상담 : 070-4157-5522~6(부산경영자총협회 콜센터)

○ 상담기간 : 2020. 4. 8.(수)부터 가능(상담시간 09:00~18:00, 공휴일 제외)

II.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1 사업 개요

- 사업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에 거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 '19.11~'20.1(3개월) 월 평균 소득액이 25만원 미만인 경우는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여행업 등 4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9.1~12월 기간 중 연속 3개월 소득액)
- 지원내용 : 1인당 일 2.5만원(최대 50만원)
- 접수기간 : 2020. 4. 10.(금)~4. 29.(수)
- 접수방법 : www.covid19busanhelp.kr(부산고용특별지원.kr)
 -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일자리정보망,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
-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 접수 → 적격여부 검토 → 승인 → 지급

웹사이트 접속 (신청자→웹사이트)	신청서 작성 (PC, 모바일)	신청서 제출 (PC, 모바일)	접수 및 검토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접수전용 웹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확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여부 검토 ◦ 중복 수혜 조회 ◦ 지원 우선순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 각 구·군 취업정보센터에서 온라인 접수방법 안내

- 운영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2 자격 요건

- 최초공고일('20.4.8) 기준 부산지역 내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종사중인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9개(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 교육관련 :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후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근무형태, 직무내용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판단되는 자

- ① 심각단계 직전 3개월('19.11~'20.1) 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 종사한 자
-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 ③ 2020. 2. 23.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로서, 피해를 객관적 서류로 입증 가능한 자(노무 미제공, 소득 감소)
 - 노무 미제공(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휴업확인서 등 제출)
 - 월 소득금액이 25%이상 소득감소(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

- 노무 미제공 일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감소액을 증빙함으로써 지원 가능
- 코로나19 심각단계 이전 3개월('19.11~'20.1) 대비 지원대상 기간('20.2.23~3.31)의 1개월 소득감소액을 판단하여 지원
- ※ 이전 3개월('19.11~'20.1) 월 평균 소득액이 25만원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9.1~12월 기간 중 연속 3개월 간 월평균 소득액 대비 지원기간('20.2.23~3.31)의 1개월 소득감소액을 판단하여 지원

○ 제외대상

- 위·수탁 계약 체결된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가입자
-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및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과 '20.2.23~3.31 기간동안 중복 없으면 본 사업 신청 가능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수혜자
- 유급휴가지원금 등 수혜자(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고소득자 제외 : 2019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자

3 지원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2020. 2. 23일 이후 사업장의 휴업 등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일 2.5만원 지급(최대 20일 50만원)
-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지원금은 아래 감소비율 적용
 - '19.11.1~'20.1.31(3개월) 평균소득대비 지원기간 소득감소

- 월 소득액 25% 이상 50% 미만 → 지원금 25만원
- 월 소득액 50% 이상 75% 미만 → 지원금 37.5만원
- 월 소득액 75% 이상 → 지원금 50만원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4. 10.(금) ~ 4. 29(수)
- 작성서류 : 홈페이지 신청 시 작성 및 첨부
- 접수방법 : www.covid19busanhelp.kr(부산고용특별지원.kr)
 -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일자리정보망, 부산경영지총협회 등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
 - 각 구·군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방법 등 안내
-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홈페이지 작성	[서식2-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작성	
첨부서류	홈페이지 양식 다운	(1) 【2.2】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노무미제공 일수 확인 가능시)
		(2) 【2.3】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증빙시)
		(3) 【2.4】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2.5】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5) 신청 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7)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위임장도 함께 첨부(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8)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자격 및 소득 입증관련자료('19.11.1~'20.1월 기간 포함) (ex) 용역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위촉서, 원천징수영수증, 보수명세서등	

※ 주민등록등본 발급: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5 지원금 지급

- 접수 후 제출서류 검토 및 중복 수혜여부 등 조회, 예산의 범위내 소득수준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지급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 지원대상 통보 후 5일 이내 지급 ※ 조회지연 등으로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관(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 사유로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등 제출을 통해 타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6 관련 문의

- 전화상담 : 1661-6719 (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
- 상담기간 : 2020. 4. 8.(수)부터 가능(상담시간 09:00~18:00, 공휴일제외)

【서식 1-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서식 1-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서식 1-3】

무급휴직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 제출_한글파일)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자 ()명이 "2020. 2. 23. ~ 2020. 3. 31." 기간동안 무급 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지원받을 근로자는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확인자 본인(사업주)은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동의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식1-4] 엑셀파일에 기재바랍니다.

전면 또는 부분 휴업 대상자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연번	구분	성명	연번	구분	성명
1	전면/부분		17	전면/부분		33	전면/부분	
2			18			34		
3			19			35		
4			20			36		
5			21			37		
6			22			38		
7			23			39		
8			24			40		
9			25			41		
10			26			42		
11			27			43		
12			28			44		
13			29			45		
14			30			46		
15			31			47		
16			32			48		

2020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4】

무급휴직 근로자 상세내역서 (사업주 제출_엑셀파일)

※ 엑셀 파일 다운로드하여 기재 후 첨부

【서식 1-5】

무급휴직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 작성, 근로자 제출용)

※ []에는 해당란에 "v" 표시를 합니다.

사업장 개요

- ① 사업장명:
- ② 대표자명:
- ③ 연락처: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업종:
- ⑥ 근로자수:
- ⑦ 소재지: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무급휴직 근로자 일일 소정근로시간 : _____ 시간/일

상기 무급휴직 근로자 1주 근무일수 : _____ 일/1주 (*제외 요일 : _____ 요일)

[] 전면휴업: 총 _____ 일 (2020. . . ~ 2020. . .)

[] 부분휴업: 총 _____ 일

부분 휴업일자 ex) 2.25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본인(사업주)은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사업장명 _____ 대표 _____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사)부산경영자총협회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7】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 ① 아래 약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 안정지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약약합니다.
- ②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 고소득자 : 2019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 3월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 지원기간 중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약약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및 조회),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재)부산경제진흥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조회 및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약속서

- ① 아래 약속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 ②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③ 본인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고소득자 : 2019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3월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지원금 등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지원기간 중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